

‘선불제 주차표 외 10종’ 구매 연간단가계약 특수계약조건

마포구 공영주차장(노상·노외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및 견인보관소를 관리운영하는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갑’)이 공영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선불제 주차표 외 10종’을 업자(‘을’)와 연간 단가 계약하여 구매함에 있어 정하는 특수계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조건의 적용)이 조건은 ‘갑’이 관리 운영하는 마포 공영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선불제 주차표 외 10종’ 연간단가계약 구매에 관한 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계약기간의 연장)계약기간 만료 후 ‘갑’의 요구에 ‘을’이 응할 경우 동일한 계약조건(단, 수량은 ‘갑’이 정하는 것으로 함)으로 ‘갑’이 정하는 기간까지 계약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선불제 주차표 외 10종’의 규격·사양과 인쇄)별첨 규격·사양서와 같다.

제4조(실제 구매수량과 인쇄사양의 수정)실제 구매 수량은 ‘갑’의 소요량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고, ‘갑’의 주차장 운영 방법의 변경에 따라 도중에 인쇄 사양이 일부 변경될 수도 있다.(이 경우 단가의 변동은 없다)

제5조(납품)① ‘을’은 ‘갑’의 납품지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수량 등 필요한 사항은 ‘갑’이 정한다.

② ‘을’이 납품할 때에는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갑’의 검수자로부터 검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지체상금)‘을’이 납품기일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일수에 따라 지체상금률(1일 1.5/1,00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갑’에게 납부(납품대금 지급 시 상계 가능)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거나 ‘갑’의 사정에 의하여 ‘갑’이 납품연기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7조(대금지불)납품 후 ‘을’의 대금청구에 의하여 ‘갑’은 15일 이내에 대금을 지부한다.

제8조(하도급 등의 금지)‘을’은 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임 및 대리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9조(손해배상)‘을’이 납품 지연과 거부, 품질, 규격 상이, 불량품 납품 등 계약조건 위반으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을’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중도해지 등)①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면 ‘갑’은 계약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납품의 지연과 거부, 불량품 납품 등으로 ‘갑’에게 손해를 끼치고, 불성실하여 계약의 이행 차질, 또는 불가능하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
2.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취소, 고발, 경고, 시정 등의 처분을 받거나 재무구조 부실로 부도, 채권압류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부실하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사유로 계약 해지 시 이미 납품된 것을 ‘갑’이 반품 요구하면 ‘을’은 1개월 이내에 재고 물품을 회수하고 해당 물품대금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을’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조항의 해석 및 분쟁)①계약서, 또는 이 특수계약조건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갑’의 제규정 및 내규에 의한다. 단, 그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민법 등 관계 법령과 유관 상관례에 따른다.

②계약 관련 소송은 피고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단, 쌍방이 합의하는 때에는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할 수 있다. 끝.

물 품 내 역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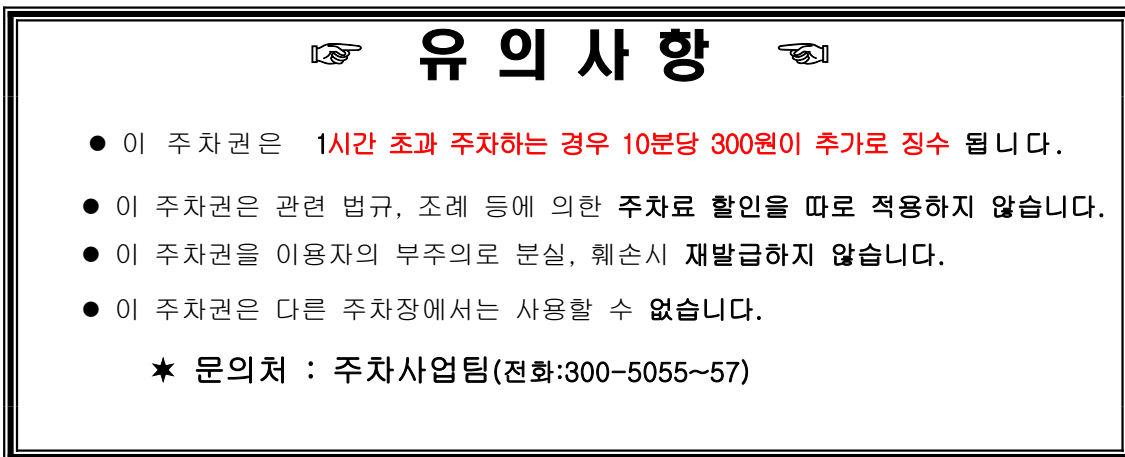
품 명	단위	수량
선불제주차표	매	230,000
견인장	매	48,000
노상시간주차표	조	10,000
방문주차권	조	12,000
노외시간주차권	매	200,000
노상정기권	매	9,600
OCR 고지서	BOX	60
PDA 롤지	롤	9,600
노외영수증 롤지	BOX	16
노외시간 영수증 롤지	롤	600
견인보관소 납부안내문	매	10,000

① 선불제 주차표

<앞 면>



<뒷 면>



- 수량 : 230,000매
 - 규격 : 8 × 5
 - 용지 : 탄트지, 120g
 - 인쇄색도 : 양면 4도
 - 특수사양 : 넘버링, 은박은쇄
 - 기타 : 제작 8종
- ※ 일련번호 : 발주 시 별도 부여

② 견 인 장

NO:A- 043201

견 인 대 상 차 량

이 구역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구역으로 지정받은 차량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차량은 주차지정을 받지 않은 부정주차 차량으로 **주차장법 제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견인대상 차량입니다.

차량번호	
위반일시	200 년 월 일 (:)
위반장소	행정동: 구획번호
보관장소	마포구 피견인차량 보관소(☎02-373-5401~2)
단속자	소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성명 :

※운전자가 차를 떠나서 즉시 이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위반이 되어 단속(견인)조치 됩니다.

단속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뒷면의 의견진술서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마포구시설관리공단(☎02-300-5042~4)으로 방문 제출하시거나 FAX(02-376-4067~68)또는 우편으로 의견을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 귀하

마 포 구 청 장
(서울특별시마포구청 대행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의 견 진 술 서

스티커번호	단속일시	단속장소	차량번호	차 종	비 고

귀하의 차량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부정주차로 단속된 사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의견진술 내용

진술인 주 소 : (우편송달 가능한 곳)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 (H·P)

붙임 : 첨부자료: 견인료 및 보관료 납부안내문, 납부영수증 사본
증빙서류()

200 년 월 일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의견진술서 제출처

• 주 소 : (121-252)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533-1
• 전화번호 : 02-300-5042~44
• 팩스(FAX) : 02-376-4068-69

- 수량 : 48,000매
- 규격 : 15 × 20
- 용지 : 아트지(200g)
- 인쇄색도 : 양면 3도
- 특수사양 : 넘버링, 양면테이프 부착

③ 노상시간 주차표

주 차 표 ③ (입금표) No. 0092098	
차량번호	차종/색상
입차시각	출차시각
:	:
주 차 시 간	주 차 요 금
주차장 명 칭	정수원
위와 같이 입금합니다. 200 년 월 일	
정기주차	설 명 전화번호 유효기간 비 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주 차 표 ② (영수증) No. 0092098	
차량번호	차종/색상
입차시각	출차시각
:	:
주 차 시 간	주 차 요 금
주차장 명 칭	정수원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200 년 월 일	
(사업자번호: 105-82-13669)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주차요금 납부 후 반드시 이 영수증을 받아 가지기 바랍니다.
 ※ 주차장 이용 관련 문의처 : ☎ 300-5058 (공영주차장담당)

주 차 표 ① (영수증) No. 0929098	
차량번호	차종/색상
입차시각	출차시각
:	:
주 차 시 간	주 차 요 금
주차장 명 칭	정수원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200 년 월 일	
(사업자번호: 105-82-13669)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주차요금 납부 후 반드시 이 영수증을 받아 가지기 바랍니다.
 ※ 주차장 이용 관련 문의처 : ☎ 300-5058 (공영주차장담당)

- 수량 : 10,000조(1권 50조, 1조 3매)
- 규격, 용지 : NCR(8×13), 50g
- 인쇄색도 : 단면 2도
- 특수사양 : 넘버링, 타공

④ 방문주차권

<1p-앞면>

<1p, 2p-뒷면>

<2p-앞면>

마포구 ○ 공영주차장 ○		공단 제출용	
방문주차권 발급신청서① (주차요금 납입서) ※ 신청인은 ※청색 탄을 기재합니다. No. 000- 00001			
※ 자동차등록번호 (차량번호)		※ 연락 전화번호 휴 대 폰 사무실(자택)	
주차일시 200 년 월 일 : 부터 3시간		지 정 주차장소	
주차요금 금 3,000원		요금일면	
위 금액을 납입하였습니다. 200 년 월 일		정 수 원 (발급자) (서명)	
※ 주차요금 납부 후 주차권(영수증)을 자동차 밖에서 잘 보이도록 자동차 안 (운전석 앞) 에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뒷면 '이용약관'에 동의하며 방문주차권을 신청합니다. ※ 200 년 월 일			
※ 신 청 인 : _____ 자필 서명)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방문주차권 이용약관 (유의 사항) 마포구 공영주차장(단, 시설주차장과 특정 거주자우선주차구간에 한함) 을 방문주차권으로 이용하려는 자는 이 약관에 동의해야 하며 그 동의 표시는 앞면 '발급신청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1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과 같은 조건 미이행시 주차장 이용 불가, 단속(경인) 등의 불이익을 명할 수 있으며 특히 경인될 경우 경인료·보관료 등 제비용은 주차장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주차장은 평일에 지정 주차장소와 주차시간(09:00~18:00) 중 3시간 이내 만 이용 가능합니다(단, 주차장 사정에 따라 토·일·공휴일과 3시간 초 과도 위 주차시간대에 한하여 3시간 단위로 연장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주차권은 요금을 납부하여야 유효하며 자동차 밖에서 잘 보이도록 자동차 안 운전석 앞쪽(유리창)에 잘 비치(부착)해야 합니다.			
4 주차장이 기존 정기 이용자의 주차, 방문차량의 질주 등으로 혼잡한 경우 주차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며 주차 권리를 불문하고 부득이 기존 정기 이용 자나 우리 공단의 출차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에 응해야 합니다.			
5 주차료는 3시간 단위로 책정된 것이므로 주차장 이용 후 3시간 이내의 비사용시간에 대한 주차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차료 납부 후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거나 주차가 불가능하여 주차장 이용 권에 환불 신청한 경우에는 환불합니다. 다만, 당일 환불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6 공영주차장은 승용차요일제 등에 차량만 이용 가능하므로 요일제 마칩여 차량은 즉시 철거 조건으로 방문주차권을 발급합니다.			
7 기타 이 약관에 정해져 있지 않거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은 '마포구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운영' 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서울 마포구 성산동 533-1(☎ 300-5042 ~45)			
마포구 ○ 공영주차장 ○		고객(차량)용	
방문주차권② (주차요금 영수증) No. 000 - 00001			
※ 자동차등록번호 (차량번호)		※ 연락 전화번호 휴 대 폰 사무실(자택)	
주차일시 200 년 월 일 : 부터 3시간		지 정 주차장소	
주차요금 금 3,000원		요금일면	
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200 년 월 일		정 수 원 (영수처) (서명)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울 마포구 성산동 533-1(☎ 300-5042 ~45) (사업자 등록번호 : 105-82-13669)			
뒷면 '이용약관'을 반드시 숙지하십시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귀 하	
※ 이 주차권(영수증)을 자동차 안 (운전석 앞)에 비치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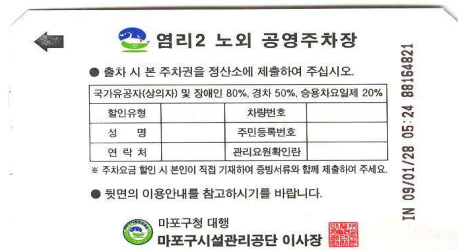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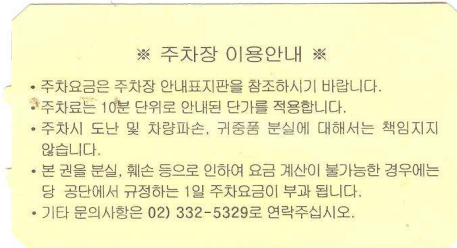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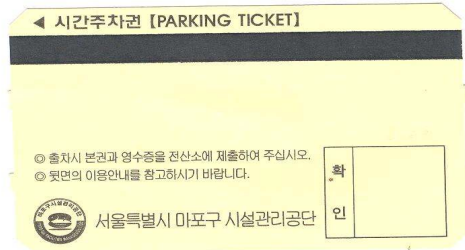
○ 규격, 용지 : NCR(14*18), 50g

○ 색도 : 양면4도

○ 특수사양 : 타공, 넘버링

○ 수량 : 12,000조(1조 2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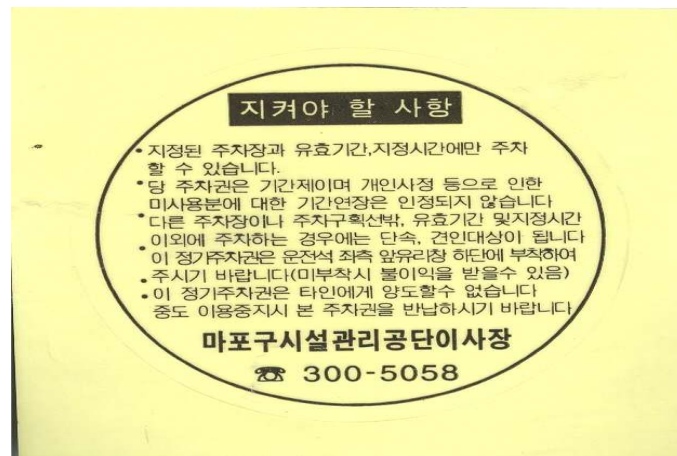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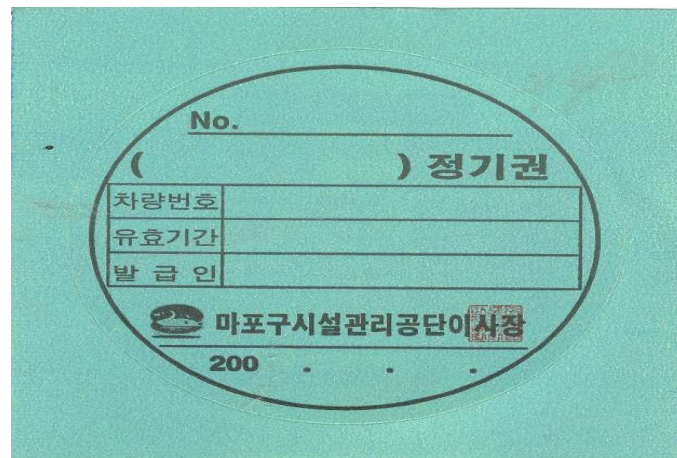
⑤ 노외주차장 시간주차권 (마그네틱)



■ 노외주차장 시간주차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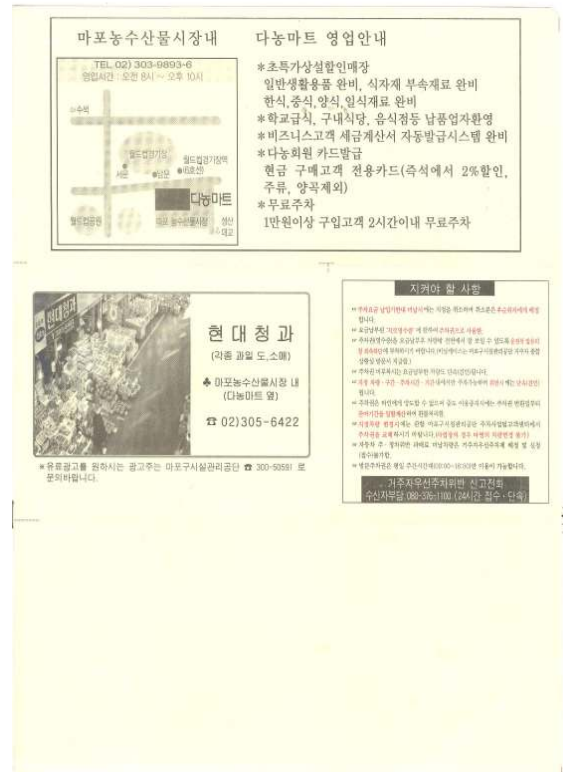
- 자기식 마그네틱(전면써멀용 주차권), 항자력 650
- 규격 : 5.3 × 8.6(230g)
- 색도 : 양면 3도
- 수량 : 200,000매

⑥ 노상정기권



- 규격, 용지 : 대드롱스티커(8.5×8.5), 230g
- 색도 : 양면 2도
- 특수사양 : 필름인쇄, 넘버링, 외곽 테두리 접착(점선 : 절취선)
- 수량 : 9,600매

⑦ OCR 전산 용지



■ OCR 고지서(거주자)

- 규격, 용지 : 20.6×26.5, QR바코드, 90g
- 색도 : 양면 4도
- 수량 : 28box(1box - 1,500매)

☐ OCR 고지서(노상 체납)

- 규격, 용지 : 20.6×26.5, QR바코드, 90g
- 색도 : 양면 4도
- 수량 : 32box(1box - 1,500매)

⑧ PDA 영수증 롤지



▣ PDA 영수증 롤지

- 특수 감열지
- 규격 : Ø39, 40M × 5.6,
- 수량 : 9,600롤

⑨ 노외주차장(양화진) 영수증 롤지



▣ 노외주차장 영수증 롤지

- 특수 감열지
- 규격 : $\varnothing 70, 52M \times 7.8,$
- 수량 : 15롤 $\times$ 16 BOX

⑩ 노외(월드컵 외 3개소) 시간주차권 영수증롤지

▣ 노외시간(월드컵 외 3개소) 주차권 영수증 롤지

- 규격 : $5.8 \times 9.8(170g)$
- 수량 : 600롤

11 견인보관소 납부 안내문

견인 및 보관료 납부안내문			
단속일시	년 월 일 시 분	견인일시	년 월 일 시 분
견인장소	과견인 차량번호		
단속차 소속	차량번호	성명	전화
위반내용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주차장법 8조의 2		
과견인차량번호	년 월 일 시 분	과견인차량번호	년 월 일 시 분
견인거리	km	보관기간	일 시간 분
견인요금	원	보관요금	원
총납부금액	원		
부과근거 : 도로교통법 제15조, 서울특별시 철도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Tel: (02) 373-5401 (보관소) 02) 373-5402 (보관소)			
마 포 구 청 장			

견인료, 보관료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출고증 (원수증)	
년도	사업자등록번호: 105-82-13669	년도	고지서№
회계명	마포구청주차장특별회계/견인보관사업	회계명	마포구청주차장특별회계/견인보관사업
세입과목	사용료수입 (견인보관사업)	세입과목	사용료수입 (견인보관사업)
성명		성명	
주소		주소	
주민번호		주민번호	
차종		차종	
차량번호		차량번호	
견인일시		견인일시	
보관일시		보관일시	
반환일시		반환일시	
견인료	보관료	견인료	보관료
합계	합계	합계	합계
납부기한:	납부장소: 마포구청인차량보관소	납부기한:	납부장소: 마포구청인차량보관소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주요담당	년 월 일	주요담당	년 월 일
마 포 구 청 장		마 포 구 청 장	

견인료, 보관료 납부고지서 (영수증발행지서) 공판용		납부필 동지서 (보관소)	
년도	고지서№	년도	고지서№
회계명	마포구청주차장특별회계/견인보관사업	회계명	마포구청주차장특별회계/견인보관사업
세입과목	사용료수입 (견인보관사업)	세입과목	사용료수입 (견인보관사업)
성명		성명	
주소		주소	
주민번호		주민번호	
차종		차종	
차량번호		차량번호	
견인일시		견인일시	
보관일시		보관일시	
반환일시		반환일시	
견인료	보관료	견인료	보관료
합계	합계	합계	합계
납부기한:	납부장소: 마포구청인차량보관소	납부기한:	납부장소: 마포구청인차량보관소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증명함.		위와 같이 영수함.	
주요담당	년 월 일	주요담당	년 월 일
마 포 구 청 장		마 포 구 청 장	

견인 요금 납부고지 안내문																							
귀하(사)는 자동차를 소유(사용)하면서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를 위반하였기에 길운법 시행령 제15조 및 서울특별시 철도, 주차위반 차량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견인비용을 고지하오니 일련의 견인으로 납부고지서에 의거 납부하여야 차량을 인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 인주시 준비사항 :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제시 ※ 단, 불법주차처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단속부서(마포구청 교통지도과)에서 추후 별도 「납부고지서」가 발송되므로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처벌방안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습니다. ● 본견인 비용 고지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단 견인 비용을 납부 하신 후 (강기 보관서 보관비용이 증가 합니다.) 행정 대청합법 및 행정 심판법등의 규정에 의거 마포구 (교통지도과 TEL : 330-2781~4)로 미로주정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견인료 산정기준 (서울특별시 철도-주차위반 견인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견인료</th> <th>보관료</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2.5분 미만</td> <td>40,000원</td> <td>30분당 7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 이내로 한다)</td> <td>주-정차 위반</td> </tr> <tr> <td>2.5분 이상</td> <td>46,000원</td> <td></td> <td>과태료는 추후 단속부서에서 고지되니 참고 바랍니다.</td> </tr> <tr> <td>6.5분 미만</td> <td>66,000원</td> <td></td> <td></td> </tr> <tr> <td>6.5분 이상</td> <td>115,000원</td> <td>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 이내로 한다)</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견인료	보관료	비 고	2.5분 미만	40,000원	30분당 7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 이내로 한다)	주-정차 위반	2.5분 이상	46,000원		과태료는 추후 단속부서에서 고지되니 참고 바랍니다.	6.5분 미만	66,000원			6.5분 이상	115,000원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 이내로 한다)	
구 분	견인료	보관료	비 고																				
2.5분 미만	40,000원	30분당 7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 이내로 한다)	주-정차 위반																				
2.5분 이상	46,000원		과태료는 추후 단속부서에서 고지되니 참고 바랍니다.																				
6.5분 미만	66,000원																						
6.5분 이상	115,000원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 이내로 한다)																					

견인보관소 납부안내문

- 규격 : 210 × 297
- 색도 : 양면 2도
- 수량 : 10,000매